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金炳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350

발의연월일: 2021. 1. 13.

발 의 자: 金炳旭・강민국・김성원

김영식 · 김형동 · 배준영

서범수 · 서병수 · 서일준

송언석 · 임이자 · 주호영

한무경・황보승희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청년들은 극심한 경쟁 속에 살아가면서도 실업과 취업난 등으로 어엿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리잡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이른바 3포세대라는 신조어가 생겨났고, 주거, 인간관계, 꿈과 희망까지 포기하는 N포세대라는 말까지 등장할 정도로 청년들은 불투명한 미래와 불합리한 현실 사이에서 어느 때 보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음.

오늘날 청년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는 청년의 시각에서 국가 정책을 설계하지 못하고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근시안적인 정책을 남발한 탓이 크다고 할 것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정치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의 목소리가 법과 제도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청년후보자를 일정 비율 추천하는 정당에는 보조금(이하 '청년추천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정당에 지급되는 국가보조금 중 경상보조금의 5%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고자 함(안 제26조의3 신설 및 안 제28조제2항).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6조의3(공직후보자 청년추천보조금) ① 국가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청년(25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같다)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지급하기 위한 보조금(이하 "청년추천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시·도의회의원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가 있는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② 청년추천보조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서 청년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이경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의 청년추천보조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예산에계상된 청년추천보조금의 100분의 50을 각 선거의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으로 한다.
 - 1. 청년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 정당이

있는 경우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40은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총액의 100분의 40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그 잔여분은 각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청년후보자수의 합에 대한 정당별 지역구 청년후보자수의 비율에따라 배분·지급한다.

- 2. 청년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 정당이 없는 경우
 - 가. 청년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30 미만을 추천한 정당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제1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나. 청년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추천한 정당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을 제1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는 청년추천보조금은 가목에 의하여 각 정당에 배분되는 청년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청년추천보조금은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정당에 지급한다.

제28조제2항 중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 야 한다"를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100분의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상보조금의 사용 용도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신 설>	재 정 안 제26조의3(공직후보자 청년추천 보조금) ① 국가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 구시·도의회의원선거 및 지역 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 서 청년(25세 이상 39세 이하 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지급하기 위한 보조금(이하 "청년추천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가 있는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청년추천보조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서 청년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 분·지급한다. 이 경우 지역구 시·도의회의원선거와 지역구자

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의 청년추천보조금은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예산 에 계상된 청년추천보조금의 1 00분의 50을 각 선거의 청년추 천보조금 총액으로 한다.

- 1. 청년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정당이 있는 경우
 -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의 100 분의 40은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총액의 100분의 40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 수 비율에 따라, 그 잔여분은 각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청 년후보자수의 합에 대한 정 당별 지역구 청년후보자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 2. 청년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정당이 없는 경우
 - 가. 청년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30 미만을 추천한정당

(생 략)

②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 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 0분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의 10 0분의 50을 제1호의 기준 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나. 청년후보자를 전국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 0분의 15 미만을 추천한 정당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의 10 0분의 30을 제1호의 기준 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 되는 청년추천보조금은 가 목에 의하여 각 정당에 배 분되는 청년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청년추천보조금은 임기만료 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 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정당에 지급한다.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①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2)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에 의한 정책연구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하여야 하며,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u>100분의 1</u>
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
여, 100분의 5 이상은 청년정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
<u>다</u> .
③・④ (현행과 같음)